

#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4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2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공공도서관 제적·폐기도서 재활용 방안」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·폐기 자료 재활용을 위한 배부 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자료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19조의2(자료 기증) 조항 신설하여 제적·폐기자료에 대한 기증이 가능함을 명시

## 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## 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## 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## 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1. 19.~2026. 2. 9.(21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**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**

**10. 관련부서: 경기도 경기도서관**

##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함에 있어” 를 “운영하는 데” 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강구” 를 “마련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강구” 를 “마련” 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설립·시설·도서관자료” 를 “설립, 시설, 도서관자료” 로 한다.

제9조 중 “의한다” 를 “따른다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48조 규정” 을 “법 제48조” 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강구” 를 “마련” 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자료 기증) 시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, 기관,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.

1. 기증받은 자료 중 소장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자료
2.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

제26조의 제목 “(실비변상)” 을 “(수당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도서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도서관정책과장 신 상 우
	팀장 직위 · 성명	도서관정책팀장 박 종 은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장 경 미 (031-790-6790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립 도서관을 <u>운영함에 있어</u>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 함으로써 시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, 교육향상,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          --- <u>운영하는 데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
<p>제4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<u>강구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<u>마련</u>-----.</p>
<p>제5조(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) ①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<u>강구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)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<u>마련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금전 등의 기부) 시장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</p>	<p>제6조(금전 등의 기부) -----            -----</p>

한다)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·시설·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,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

제9조(도서관의 이용일 및 시간) 도서관의 이용일과 시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0조(사용료 등) ①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4조(지식정보 격차의 해소)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 설립,  
시설, 도서관자료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(도서관의 이용일 및 시간) -  
-----  
----- 따른다.

제10조(사용료 등) ① 법 제48조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지식정보 격차의 해소) --  
-----  
-----  
----- 마련-----  
-----.

제19조의2(자료 기증) 시장은 독  
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 
공유를 위하여 개인, 기관, 단체  
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

제26조(실비변상)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수 있다.

1. 기증받은 자료 중 소장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자료
2.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

제26조(수당 등) -----  
-----  
범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1 「도서관법」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090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제45조(도서관 인력·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)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 기준,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·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·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2 「도서관법 시행령」

[시행 2025. 10. 1.] [대통령령 제35811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33조(도서관 인력·시설·자료)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.

#### ■ 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 7]

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(제33조제3항 관련)

##### 1.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

- 가.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
- 나.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
- 다.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

##### 2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

- 가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- 나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- 다.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
- 라.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(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호에서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.